#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



[시행 2024. 3. 13.] [방위사업청예규 제903호, 2024. 3. 13., 일부개정]

방위사업청(기술정책과), 02-2079-6393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(이하 "국방기술"이라 한다)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 및 적용범위)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3과 같다.

- ② 이 지침은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,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.
- 1.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
- 2. 국방과학연구소(이하 "국과연"이라 한다)와 그 부설기구(지상・해양・항공기술연구원, 이하 "기술연구원"이라 한다)
- 3. 국방기술품질원(이하 "기품원"이라 한다)과 그 부설기관(국방기술진흥연구소, 이하 "국기연"라 한다)
- 4. 산학연(방산업체, 일반업체, 중소·벤처기업, 대학, 전문연구기관, 일반연구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)
- 5. 국방부 및 직할기관/부대
- 6. 합동참모본부(이하"합참"이라 한다)
- 7. 육・해・공군・해병대(이하"각 군"이라 한다)
- **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① 이 지침은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에 근거하며, 본 지침상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과 상충하 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을 우선하여 따른다.
  - ②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따른다.

제4조(업무분장)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.

- 1. 국방기술보호국
  - 가.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
  - 나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·통제(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)
  - 다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수립
- 2. 방위산업진흥국

- 가. 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계되는 핵심기술 과제 제기
- 나. 기술력 우수 기업(방산혁신기업, 국방벤처협약기업 등) 추천
- 3. 방위사업정책국
  - 가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비용분석
  - 나.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
- 4. 통합사업관리팀
  - 가.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 통제
  - 나. 소관 핵심기술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(안) 및 예산 편성(안) 검토・요구
  - 다. 핵심기술 과제 제기
  - 라.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
- 5. 국방부
  - 가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(시험개발)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
  - 나. 핵심기술 과제 제기
- 6. 합참, 각 군
  - 가. 핵심기술 과제 제기
  - 나. 각 군의 핵심기술 제기과제 종합(합참)
  - 다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(시험개발)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
- 7. 국과연(기술연구원 포함)
  - 가. 핵심기술 과제 제기(각 군 공동기획 포함)
  - 나. (삭제)
  - 다.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
  - 라.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(시작)업체 선정(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) 및 계약
  - 마. (삭제)
  - 바. (삭제)
  - 사.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개발수행
  - 아.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, 정산 및 환수 등
  - 자,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/종합
  - 차. (삭제)
  - 카.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기획
- 8. 기품원(국기연)
  - 가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
  - 나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
  - 다.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및 종합
  - 라.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(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) 및 협약

- 마.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 관리
- 바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
- 사.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, 정산 및 환수 등
- 아. 획득기술, 인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 통합관리/DB화
- 자.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종합/관리
- 차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
- 카. 성실수행 및 창의도전수행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타. 국내·외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수준 조사
- 파. 국방기술기획서(안) 작성 및 일반본 작성/배포
- 하.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정보 및 보유기술 수집 및 공유
- 거.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조사 및 분석
- 9. 산학연
  - 가. 핵심기술 과제 제기
  - 나. 산학연주관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
  - 다.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/종합
  - 라.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(시험개발)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(안) 작성
  - 마.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

##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

- 제5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근 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.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 및 기품원(국기연)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영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확보방안(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, 민군겸용기술개발,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)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이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국과연소장은 미래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절차)**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6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.
  - ②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국방 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. 이 때 기수행된 추진실적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.

-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(안)을 작성하여 방위사업기획·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관련기관에 통보한다. 이 경우 국방부, 합참, 각 군, 사업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7조(국방기술기획서 작성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발간한다.
  - ②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중・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(중・장기 기술확보 로드맵 및 중・장기 기술확보 목록)
  - 2. 핵심기술개발 과제 목록
  - 3.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중점 추진 분야 및 계속과제 목록
  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WBS기반 조사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방기술기획서(안)을 작성한다.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의 요청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기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정책적 추진방향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국방기술기획서(안)에 반영한다.
  - ④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를 국방기술기획서(안)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⑤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기술기획서 확정 후 2개월 이내 산학연이 참고할 수 있는 일반본을 작성하여 배부한다.
- 제8조(기획관리자 운영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미래 전장을 선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등의 기획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투자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(Program Director, 이하 "PD"라 한다)를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으로 하여금 위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PD의 자격과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## 제3장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

- 제9조(중기계획 작성 원칙)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되, 총액(프로그램)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절차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(안)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(삭제)
  - ③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에 대한 해당 분야별 검토주관부서/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: 국방기술보호국 기술혁신과
- 2. (삭제)
- 3.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: 통합사업관리팀
- 4.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: 방위사업정책국
-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시험개발과 연계된 응용연구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개발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-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중기계획요구서(안) 작성 자료 제출 시 미요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관련부서/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중기계획요구서(안)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(재정담당관)에 제출한다.
- **제11조(예산편성 작성 원칙)**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편성하되, 총액(프로그램)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예산편성 대상사업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(안) 자료를 작성하되,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,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된 핵심기술(시험개발) 과제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해 신규과제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장의 핵심기술 과제결정 절차를 준용한다.
- 제13조(예산편성 절차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,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(안) 작성 자료를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(삭제)
  -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(국기연)가 제출한 소관 핵심기술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고, 국방기술보호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.
  -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, 관련기관(합참, 사업주관부서, 국과연, 기품원 등)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  - 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서(안)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(재정담당관)에 제출한다.
  -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미반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, 사업통제부서가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예산운용)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과 변경된 착수시기 등에 대해 방위사업기획·관리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(기술기획) 실무위원회(이하"실무위원회"라 한다)에 상정하여 심의 • 조정한다.

- 제15조(국과연 연구개발 인력운용) ① 국과연소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편성(안) 작성 자료 제출 시 F+1년도의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투입 인력 및 국과연 연구인력 대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가용 인력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의 인력 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예산요구서(안) 작성시 국과연주관을 산학연주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.
  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변경된 과제의 예산(연구개발 인력비용 등)을 재검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과연은 매분기마다 과제별 계획 대비 인력투입 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며, 인력투입이 미흡하거나 과다한 경우 사유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⑤ 국방기술호보호국장은 국과연 신규 과제 추진 시 부서별 인력투입 실적을 고려하여 검토한다.

## 제4장 국방기술사업 수행

## 제1절 일반사항

- **제16조(사업일반)** 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시제(시작)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공개경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1.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
  - 2.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이전 단계를 수행한 연구개발주관기관, 및 시제(시작)업체로 하여금 다음단계의 연구 또는 시제(시작)품 생산을 계속하도록 선정하는 경우
  - 3.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고, 연구개발을 추진 하기로 결정된 경우
  - ② 산학연이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공개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다. 산학연이 제안한 과제의 과제기획・결정・ 착수 및 공개경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  - ③ 고위험도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위험분산 및 산학연 경쟁유도를 통한 최종적인 성공보장 등을 목적으로 동일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.
  - ④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수 있다. 단,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.
  -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으며, 참여연구원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」제4조를 준용한다.
- **제17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)**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「방위사업기획・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- **제18조(기술보호, 보안 및 주의의무)** ① 국방기술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,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(시작)업체는「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」및「군사보안업무훈령」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필요시 별도로 보안관련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보안수준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③ 업무수행 관계자는 국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 제2절 사업수행계획 및 협약

- 제19조(사업수행계획의 작성) ①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품원 (국기연)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(안)을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.
  - ③ (삭제)
  - ④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(안)은 국방기술보호국장 결재로 확정한다.
  -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, 예산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연구개발주관기관,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 (시작) 업체 선정)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, 공정성,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,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 (시작)업체를 선정한다.
  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주관기관,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선정 후 선정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.
- 제20조의2(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특례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1.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정출연"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
  - 2. 기술력을 갖춘 중소・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정출연 및 중소·벤처기업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검토한 경우 제 36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과제를 결정한다.
  - ③ 제1항제1호의 정출연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 정출연의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
- 2. 정출연이 국방기관(각 군, 국기연, 국과연 등)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과제
- 3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핵심기술(시험개발은 제외한다)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경우
- ④ 제1항제2호의 경우는 「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고시」에 따른다.
- 제21조(협약의 체결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1.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
  - 2. 연구개발계획서
  - 3.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
  - 4.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보고서,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
  - 5.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다만,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③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 수립한다. 이때,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「국 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・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적용한다.
- 제22조(협약의 변경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기품원장(국기 연소장)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의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약의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.
- 제23조(협약의 해약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1.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  - 2.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
  - 3.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4.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
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약의 해약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 수립한다.

## 제3절 성과평가

- 제24조(성과평가계획 수립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.
  - 1. 국과연소장은 국과연주관 핵심기술에 대하여 차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요구일자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(국기연)에 통보한다.
  - 2.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보고하고, 국과연에 통보한다.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, 성과평가결과를 종합
  - ・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  - 1. 중간평가 : 과제 수행기간중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평가로 단계가 구분된 경우 각 단계별 중간시점에 실시한다.
  - 2. 종료평가 : 단계전환 및 과제 종료시 실시하는 평가로 종료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. 이때, 합참 주관의 시험 평가계획이 있는 과제의 경우는 시험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25조(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·운영토록 한다.
  - ② 국과연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(국기연)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.
  -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성과평가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품원(국기연)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⑤ 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.
- 제26조(핵심기술개발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) ① 성과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중간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'정상추진',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'계획조정', 70점 미만인 경우 '사업중단'으로 판정한다.
- 2.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'합격',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'계획조정', 70점 미만인 경우 '불합격'으로 판정한다. 이때,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.
- 3.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'합격', 80점 미만인 경우 '불합격'으로 판정한다. 이때, 불합격과제는 단계를 전환할 수 없다.
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평가위원의 검토의견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(또는 계획) 및 확인사항을 추적관리 하여야 한다. 단, 성과평가 결과 '계획조정', '사업중단' 및 '불합격' 등에 대해서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근무일 이내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## 제27조 (삭제)

- **제28조(평가자료 관리)**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안서평가,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,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, 국방기술보호국장 요구시 그 결과 및 개선(안)을 보고한다.
  - ② 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시제(시작)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
  - 2.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
  - 3.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  - ③ 기품원(국기연)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
  - 2. 성과평가 결과(평가수검기관 발표자료 포함)
  - 3.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
  - 4. 기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  - ④ 제2항 1호 및 제3항 제1호부터 제2호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하고, 기타자료는 과제종료시 까지 보관하되,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.
  - ⑤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(국기연)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.
  - ⑥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중간평가 결과 분석 후 '사업중단' 또는 '불합격' 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%에 포함된 과제목록(과제별 평가점수 포함)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사업통제부서 및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. 국과연소장은 대상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에게 제출하고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성과평가계획(안) 수립시 심층평가 방안(평가위원 증가, 평가시간 연장 등)을 반영하도록 한다.

## 제4절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

- 제29조(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F-1년도 종결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F-1년도 종결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(시제(시작)비, 위탁연구비, 용역비 등) 및 인력, 수행 기간 현황
  - 2. 개발된 기술의 성격(공통/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)
  - 3.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/용역, 위탁연구 추진현황 및 사유
  - 4. 개발된 기술의 가치분석
    - 가.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TRL(Technology Readiness Level) 분석(단,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)
    - 나.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EL 기술 등의 개발 건수
  - 5.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
    - 가. 무기체계 적용, 민간 기술이전, 특허 출원, 논문발표 및 표준제정 실적 등
    - 나. 후속 연구와 연계 및 활용
    - 다. DTiMS 탑재 현황 등
  - 6.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
  - 7. 개발된 핵심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활용 증대 방안
  - 8. 차기 국방기술기획시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등
  - ③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-6년부터 F-2년 과제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결과의 활용 실적을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 여 해당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개발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실적
    - 가. 적용/활용, 적용 예정 및 미적용 기술로 분류하되, 적용 예정, 미적용 기술은 향후 적용 계획 및 미적용 사유를 검토한다.
    - 나. 활용 기술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시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.
  - 2. 민간 기술이전 건수 및 징수된 기술료
  - 3. 연구개발시 확보한 시험장비 및 시제(시작)품의 활용 현황 (단,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)
  - 4.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DTiMS 탑재 현황
  - 5. 특허 출원/등록, 논문 등록/발표 및 표준제정 건수
  - ⑤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를 수행시 연구개발자 면담실시여부, 사용군 현장, 활용실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.
  - ⑥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,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별표 7에 따라 명시하여 야 한다. 단,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(공개할 자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, 실적 인정기준)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한다.

⑦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, 합참, 각군에 통보한다.

## 제30조 (삭제)

#### 제5장 핵심기술개발

#### 제1절 일반사항

- 제31조(사업일반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선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 - 1. 장기후기(F+13년) 이후 전력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
    - 가. 국과연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
    - 나.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산학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
  - 2. 정책적으로 국과연에게 부과된 다음 각 목의 과제
    - 가. 국방부장관, 방위사업청장이 국과연에게 부과한 정책적 지시과제
    - 나. 국과연이 긴급한 무기체계 핵심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기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받은 과제
  - 3. 각 군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핵심기술 과제
  - 4. 새로운 시험평가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
  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련기관의 검토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주관 형태, 계획조정 및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  - 1. 산학연주관 과제에 대한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
  - 2.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 활용도 및 체계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
  - 3. 성과평가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 사업통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제32조(과제 조정・통제 등의 업무 이관)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핵심기술 과제 조정・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.
  - 1.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
  - 2.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
  - 3.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
- 제33조(핵심기술 과제기획 일반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을 위한 주요사항(과제기획 방안 등)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한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핵심기술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책과 핵심기술 과제제기 대상이 반영된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핵심기술과제 제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방위사업청·국방부·합참·각 군·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별도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, 세부계획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.
- ④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국방과학기술확보계획을 근거로 다음해 착수 할 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연구한다.
- 1. WBS 분석 및 세부 분할과제 도출
- 2. 요소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분석
- 3. 세부 분할과제별 목표성능 및 예산판단
- ⑤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전략기술 및 합참의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근거로 무기체계 WBS기반 핵심기술(중점관리 소재, 부품 및 구성장비 개발 핵심기술 포함) 과제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을 수행한다.
- ⑥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개발과 부품국산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.
- ⑦ 국과연소장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핵심기술 과제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, 기품원(국기연)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세부 절차를 별도 수립할 수 있다.
- 제34조(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무기체계 WBS(Work Breakdown Structure)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핵심기술을 식별 및 과제를 기획한다. 이때 WBS 기반 분석기법은 미국의 MIL-STD-881(WORK BREAKDOWN STRUCTURES FOR DEFENSE MATERIEL ITEMS)를 참고하고, Level 1~5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.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구성품(소재, 부품 및 구성장비)에 필요한 복수의 핵심기술을 단일과제로 하는 '무기체계 패키지형핵심기술'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.
  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기술발전추세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 정책적 지시과제 및 단일과제에 대해서도 하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35조(상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33조제2항의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기준으로 산학연이 과제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과제공모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고, 산학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한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부, 합참, 각 군,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하여, 기품원(국기연)에 제출한다.
  - 1. 국방부는 직할기관/부대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.
  - 2. 합참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.
  - 3. 사업본부는 해당 IPT별로 선행연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간 식별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한다.
  - 4. 국과연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와 각 군과 공동으로 기획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.
  - ③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기기술명
- 2. 기술개요
- 3. 필요성
- 4. 목표성능
- 5.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
- 6.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
- 7. 기술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
- 8. 기타: 기대효과, 민군겸용개발 가능 여부, 관련기술 등
- ④ 과제제기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과제제기기관은 무기체계 8대 분야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(기초연구, 응용연구, 시험개발) 구분이 가능하도록 과제제기서를 작성한다.
- 2. 신규과제 제기 대상기간은 착수시기 기준 F+1년 ~ F+15년으로 하며,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기한다.
- 3. 기초연구 과제 제기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.
- 4. 과제제기기관은 중복성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산학연이 제기한 신규 과제는 기품원(국기연)에서 상호 중복성을 검토한다.
- ⑤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소·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공통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과제
- 2.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에서 도출된 세부 분할과제
- ⑥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.
- 1.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 발전추세와의 부합성
- 2. 과거 개발사례 및 중복성 여부
- 3. 기존 핵심기술기획(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기획 포함) 내용과의 연계성
- 4. 국내·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
- 5. 기술과제의 활용성 등

제36조(핵심기술 과제결정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과 국과연 소장은 과제(제3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과제)기 획 결과가 반영된 F+1년도 착수 핵심기술 과제결정(안)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,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• 조정한다. 과제결정(안)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
- 2. 요구되는 목표성능(응용연구, 시험개발 구분)
- 3. 주관형태(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)

- 4. 적절한 개발방법(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여부 포함), 기간, 예산 등
- 5. 제33조6항에 따라 추진하는 핵심기술 과제 현황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서 제외한다.
- 1.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
- 2. 시험시설, 장비 등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제
- 3.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
- 4. 특허 출원・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
- 5. 기술지원 사업
- 6. 상호운용성,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「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」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중장기 확보기술 목록의 착수시기가 F+1년이 도래된 기술을 과제결정(안)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과제기획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사유를 10월말까지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
- ④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보고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34조 및 제35조와는 별도로 정책적 지시과제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착수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제37조(중장기 기술확보 목록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F+2년 이후 착수 핵심기술은 국방기술기획서(안)의 중장기 확보기술 목록에 포함한다.
  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 국과연 소장은 중장기 확보기술 목록의 수정·삭제(안)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,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·조정한다.
  - ③ 실무위원회에 심의·조정된 내용에 대해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장결재를 받아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하여야한다.
- 제38조(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수정) ①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은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중장기 확보기술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내용을 반영한 과제제기서를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라 제출한다.
  - 1. 과제명
  - 2. 연구목표
  - 3. 주관형태
  - 4. 사업착수연도
  - 5. 사업기간
  - 6. 적용무기체계
  -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기서는 제37조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다.
  -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·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제2절 과제관리

제39조(연구개발계획서 작성)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주관과제에 대하여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(산학연 과제에 한함)를 수립한다. 이때,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- 1. 사업 개요
- 2. 개발목표 및 범위
- 3. 적용대상 무기체계
- 4. 이전 연계과제 연구결과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- 5. 연구개발 계획
  - 가. 기간 및 소요예산
  - 나. 추진일정
  - 다.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
  - 라. M&S 활용계획
  - 마. 연구인력계획
  - 바. 시제(시작)제작계획
  - 사. 위탁연구대상과제와 수행계획
  - 사. 해외협력계획
  - 아. 해외출장계획
  - 자.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(시험개발과제 중 적용무기체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신뢰도 분석값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)
  - 차. 시험평가계획(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, 통합시험 수행여부를 포함한다)
  - 카. 규격화계획(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)
  - 타. 성과평가 계획(평가일정, 중간평가시 평가받을 연구 개발 목표성능 및 추진계획, 연구비 집행 계획 등)
  - 파. 국방표준서 제정계획(표준 제정이 필요한 과제에 한한다)
- 6. 연도별 연구계획(연구개발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계획과 관리계획 포함)
- 7. 시제(시작)품 활용계획
- 8.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
- 9. 비용분석 결과
- 10. 상호운용성 및 표준(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)
- 11. 소요군, 체계사용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개발 참여 계획
- 12. 개략 운용시험평가계획(운용시험평가 계획 과제에 한한다)
- 13.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(「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」별표10 서식을 따르며, 시제생산이 수반되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)

- 14. 기타 사항 등
- ②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"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"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
- ③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검토결과서(요약서 포함),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고, 사업통제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다. 이때,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- ④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는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, 국방기술보호국장 은 기획조정관(재정담당관)에 통보한다.
-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전산저장매체 1부를 기품원 (국기연)에 제공하며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/활용 하여야 한다.
- ⑥ 운용시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,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소요군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연구개발계획 변경)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.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.
  - 1. 사업기간 연장
  - 2. 연구목표 수정
  - 3. 총사업비 증가
- **제41조(과제관리 및 수행)**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.
  - ② 국과연 및 기품원이 보유한 개발성과물의 활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요구 시 국과연소 장 및 기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③ 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과제 중 규격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품의 부대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내장형 S/W의 경우「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개발관리절차는 위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.
  -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핵심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,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소요군, 방위사업청, 국과연 등 유관 기관/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.
  - ⑤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체계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, 국과연 주관 사업인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며,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부서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⑥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체계개발과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,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무기체계에 적용할 시험개발의 결과물과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체계간 동시 운용 가능성

- 2. 시험개발로 개발된 체계의 운용상 문제점
- 3. 시험개발 목표성능과 적용 무기체계 군 요구성능의 연계성
- 4. 시험개발 결과의 무기체계 적용계획 및 일정
- 5. 기타 체계개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구사항 등
-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과제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'사업비 산정·관리 및 사용·정산'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다.
- **제42조(과제 종료)**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 결과, 협약 또는 계약조건 충족여부, 종료평가 후속조치 결과 등을 포함한 종결보고서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.
  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  - 1. 과제개요
  - 2. 기술현황 분석(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)
  - 3.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(과제별 투입인원 및 산 세부 집행결과 포함)
  - 4. 시제(시작)업체, 연구개발참여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국가(국제공동연구, 해외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등)등의 참여현황
  - 5. 시험평가 결과
  - 6. 연구개발 효과(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,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)
  - 7. 세부 성과(특허 및 소프트웨어, 국내외 학술지/학술대회 발표실적, 연구보고서 목록, 표준 개발결과, 종합군수 지원요소 개발결과, 도입품목 목록, 단종예상부품 포함)
  - 8. 향후 추진계획(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계획된 핵심기술연구개발과제)
  - 9. 결론 및 건의
  - 10. 기타 필요사항 등
  - ③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과제 종료후 2개월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보호국, 관련 통합사업관리팀, 합참(시험개발과제의 경우)에 제출하고, 연구결과보고서와 제2항제7호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목록이 포함된 전산저장매체 1부는 기품원(국기연)에 제공하며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결과를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(DTiMS) 및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제173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반영한다.
  - ④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될 무기체계의 전력화 일정 등이 수정되어 시험개발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용연구단계에서 과제를 종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개발단계의 개발계획은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.
- **제43조(규격자료 등 관리)**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시험평가결과 "군사용 적합" 판정을 받은 핵심 기술과제의 시제품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. 이 경우 규격화 여부 및 절차는「표준화 업무규정」을 따른다.
  -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핵심기술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규격을 작성 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종결하며, 그 규격 자료를 관리 및 유지한다.
  - ③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「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」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한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시험개발 과제의 최초 운용시험평가 종료시 시험개발종료보고서에 임시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

- 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연구개발 결과로 표준서(안)을 작성하는 과제에 대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추진한다. 이 경우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표준화 업무규정」을 따른다.

# 제3절 세부사업별 관리기준 제1관 기초연구

제44조(일반사항) ① 기초연구는 개별기초, 특화연구실, 특화연구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필요시 기초연구과제를 복수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2단계 과제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에 의해 1개 기관만을 2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연구수행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대 2단계로 6년간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기초연구사업을 통합/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참여 연구원들의 정보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.
- **제45조(개별기초연구 관리)** ① 개별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"과기정통부")에서 주관하는 「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」에 통합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과기정통부의「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」중 수요견인형 과제 기획을 위해 핵심기술 (개별기초) 등으로 결정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.
- **제46조(특화연구실 관리)** ① 특화연구실은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연구실장: 부교수급,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는 자
  - 2. 연구책임자: 조교수급,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
  - 3.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: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
  - ② 특화연구실 유치기관은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 또는 기품원(국기연)로부터 수령한 연구비중 해당 과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③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보조원이 특화연구실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7조(특화연구센터 관리) ① 특화연구센터 선정기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해당 설립분야에 대한 연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기관
- 2. 설치기관의 육성의지 및 지원내용이 우수한 기관

- 3. 대학의 경우 해당분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
- 4. 기타 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기관
- ② 특화연구센터는 단계별 3년씩 2단계로 6년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대 3단계로 9년간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센터과제의 성격 및 목표에 따라 1년 단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화연구센터는 컨소시엄 형태의 센터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연구실별 제안서 공모/선정후 센터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④ 특화연구센터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전환시 연구내용변경, 과제변경, 예산조정 등을 기품원(국기연)에 건의할 수 있으며,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검토 후 변경건의(안)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특화연구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책임을 갖는 센터장과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는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센터장: 정교수급,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센터 설립 시부터 센터 종료 시까지 재직 가능하며, 타 사업의 연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는 자
- 2. 연구실장: 부교수급,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단계시작시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
- 3. 연구책임자: 조교수급, 선임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
- 4.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: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
- ⑥ 특화연구센터는 주요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특화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센터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- ⑦ 특화연구센터 유치기관은 연구실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기품원(국기연)로부터 수령한 해당 연구비중 특화연구센터 설치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한다.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한다.
- ⑧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특화연구센터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⑨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특화연구센터의 중간 및 단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
- ⑩ 특화연구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, 연구자의 연구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로 최대 30%까지 예산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, 특화연구센터 자체 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품원(국기연)에 건의할 수 있다.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예산조정 후 사업통제부서장과 특화연구센터에 통보한다.

## 제2관 국제공동연구개발

제48조(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원칙) ①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(이하 "기술협력 양해각서"라 한다) 체결 등 국제기술협력 기반이 구축된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(이하 "상대국"이라 한다)과 수행한다.

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국과연 주관과 산학연 주관으로 구분한다.
- ③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상대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과제이여야 한다.
- ④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.
- 1. 타 핵심기술 과제와 중복되지 않고,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 연계되는 과제
- 2. 국제공동연구개발이 개발비절감, 기술적 위험성 감소, 우수기술의 조기확보, 수요확대, 방산협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
- 3. 일부 요소기술을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과제
- ⑤ 국제기술협력은 방산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.
- **제49조(과제결정)** ①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제36조에 따라 F+1년 착수 과제를 결정해야 하나, 상대국과의 협력기간을 고려하여 F+5년 착수 과제까지 결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35조의 절차와 별도로 국제기술협력위원회(이하 "기술협력위원회"라 한다)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. 단, 실무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한다.

제50조(사업협정서 체결) ① 국과연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협정서를 작성한다.

- 1. 과제명 및 협정기간
- 2. 양국의 과제관리 기관, 과제수행 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
- 3. 연구수행 내용 및 비용
- 4.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, 협력범위 등
- 5.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
- 6.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
- 7.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
- 8. 협정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
- 9. 사업협정서의 수정, 종료 등에 관한 사항
- 10.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체결 시,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방문서명 또는 교차서명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건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서명자가 국방기술보호국장으로부터 서명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, 주관기관이 사업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. 이 때 주관기관은 서명 사본을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를 국과연과 기품원(국기연)에 통보하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사업 협정서 사본을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(DTiMS)에 탑재한다.
- 제50조의2(사업합의각서 체결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,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합의각서(안)을 작성하여, 연구개발(과제)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.

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연구개발과제, 기간 및 사업합의각서 유효기간
- 2.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
- 3. 연구개발 내용 및 비용
- 4.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, 협력범위 등
- 5.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
- 6.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
- 7.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
- 8. 사업합의각서 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
- 9. 사업합의각서의 수정, 종료 등에 관한 사항
- 10.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합의각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자체 법무검토를 실시하고, 기품원(국기연)과 협약체결을 위해 법무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1조(보관 및 현황보고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에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현황을 관리한다.

- ② 주관기관이 서명권한을 위임받아 사업협정서를 체결한 경우,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황을 유지하고 반기 1회(6월, 12월)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사업협정서 명칭(국문, 영문)
- 2. 통제번호(체결연도-체결순번-체결기관-PA / IEA / DEA)
- 3. 비밀등급
- 4.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(부서)
- 5. 서명일자, 사업협정서 서명자
- 6. 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
- 7. 사업협정서의 관리책임부서(자)
-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「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제52조(국방과학기술 자료교환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상대국과 체결한 자료교환협정서를 통해 방위사업청 출연기관(이하 "출연기관"이라 한다)과 상대국간에 국방과학기술 자료를 교환(이하 "자료교환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② 출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교환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교환협정서를 작성한다
- 1. 자료교환협정서 명칭 및 협정기간
- 2. 자료교환 담당기관 및 담당자
- 3. 자료교환 방법, 범위 및 내용
- 4. 교환된 자료의 활용 및 보호
- 5. 자료교환협정서의 수정, 종료 등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자료교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출연기관은 자료교환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교환협정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선임한다.
- 1. 기술수석(PO, Project Officer): 협정서별 자료교환 총괄 관리
- 2. 기술선임(TPO, Technical Project Officer): 기술분야별 자료교환의 제반 실무수행
- 3. 기술주임(ATPO, Assistant Technical Project Officer) : 기타 자료교환에 필요한 업무수행
- ④ 선임된 각 담당자는 자료교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교환되는 모든 내용의 문서화
- 2. 자료교환 범위 준수 및 보안대책 마련
- 3. 상호 제공 또는 획득한 자료 목록유지 및 현황보고
- 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축적을 위해 획득한 기술자료를 기품원장에게 제출하여 국방기술정 보통합관리체계(DTiMS)에 탑재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자료교환협정서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다.
- 제53조(국방과학기술 인력교환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출연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에 대해 정부간 체결한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연구기관에 상호파견, 교환근무 등의 형태로 인력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
  -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 인력교환(이하 "과학기술자 교환"이라 한다)의 제반업무를 조정·통제한다.
  - ③ 출연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, 매년 11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1. 선발공석 및 계획
  - 2. 파견대상 국가 및 연구기관(직위)
  - 3. 파견기간
  - 4. 과학기술자 파견 후 활동계획
  - ④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에 따른 선발결과와 선발자의 파견계획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.
  - ⑤ 파견대상자 및 귀국자는 파견기간 중 활동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기술보 호국장에게 제출한다.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품원(국기연)에 통보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관리체계(DTiMS)에 탑재하도록 한다.
  - ⑥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.
- 제54조(기술협력위원회 운영)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가별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신규 협력분야 선정
  - 2.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공동기획
  - 3. 자체 기획한 과제의 상호 제안

- 4. 기술협력의 제한사항 해결
- 5. 기타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
- ② 기술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별로 체결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단,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 타 기관의 명의로 체결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근거로 운영되는 기술협력위원회도 국 방기술보호국장이 주관한다.
- ③ 출연기관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하에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력위원회를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때,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- ④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필요 시 기술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방산·군수협력공동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하여 보고 함으로써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.

## 제6장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

제55조 (삭제)

제55조의2 (삭제)

제56조 (삭제)

제56조의2 (삭제)

제56조의3 (삭제)

제57조 (삭제)

#### 제7장 기술관리

제58조(국방기술의 대상)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기술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정부가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
- 2. 정부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

**제59조(국방기술정보관리)** 기술정보 보유기관은 「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술정 보를 관리한다.

제60조(기술자료 등록 및 보관)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등록 및 보관은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의 절차를 따른다. 다만 "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" 작성시 민수이전 가능여부를 명시하고, 민수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61조(기술개발성과의 활용)** ①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은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제172조를 따른다.
  - ② 국과연소장 또는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기체계와 시험개발 과제의 연동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개발 과제가 최초 운용시험평가 후 임시규격으로 제정되는 경우 획득방법을 구매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국과연 및 기품원(국기연)는 후속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.
  - ④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(기획, 계획, 사업관리 등)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시험평가 결과 "군사용 적합" 판정 및 규격화 후 무기체계에 적용한다. 다만,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시험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.
  - 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제(시작)품을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시제(시작)품의 제작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1. 소요군이 핵심기술개발로 제작된 시제(시작)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
  - 2. 국과연이 시제(시작)품을 소요군에 제공하여 운용성 확인, 교육훈련, 개발 개선사항 도출 등 잠정운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 - ⑥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(시작)품을 제공하는 경우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확인한 소요량, 요구성능 등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.
  - ⑦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5항에 따라 소요군에 시제(시작)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제(시작)품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⑧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법 제10조,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 산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하는 경우,「지식재산권 관리지침」에 따라 양도계약 체결을 위해 공동소유기관 자격 여부 검토 등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⑨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종료평가 결과 "합격" 또는 "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실적을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⑩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국방기술보호국과 첨단기술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① 개발결과의 활용실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  - ① 무기체계 체계개발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(이하 "참여업체"라 한다)의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장이 요구하는 경우 국기연소장은 참여업체에게 기술개발 주관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참여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물 세부내역 제공, 기술이전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제8장 성실수행평가 및 창의도전수행평가

- 제62조(성실수행평가 일반) ① 성실수행평가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한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
  - 2.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6조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거나,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
  - 3. (삭제)
  -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에게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(삭제)
  - 2. (삭제)
  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.
  - ④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 (국기연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6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
  - 2.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(근거)자료
  - 3.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
- 제63조(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한다.
  - ②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평가위원장 :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
  - 2. 간사: 기품원(국기연) 담당자
  - 3. 평가위원 :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.
  - ③ 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.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/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.
  - ④ 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,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.
  - 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(국기연)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.
  - ⑥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#### 제64조(성실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) ① 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
1. 사업통제부서장은 평가에 참관할 수 있으며, 국과연 및 기품원(국기연) 과제관리자는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 대 상과제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.

- 2.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, 토론,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.
- 3. 평가위원(평가위원장 포함)은 성실수행 평가기준(별표 6)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.
- 4. 연구개발주관기관 발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,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,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'성실수행'으로 판정한다.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평가위원별 평가서,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.
- ④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성실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실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성실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65조(창의도전수행평가 일반)**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
- 1.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
- 2.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6조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거나,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
- 3. (삭제)
- ② 국과연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품원(국기연)에 평가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, 국과연에 통보한다.
- ④ 창의도전수행평가를 요청한 국과연의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창의도전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(국기연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6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
- 2.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(근거)자료
- 3.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
- ⑤ 창의도전수행평가위원회는 제63조의 성실수행평가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및 운영한다.

## 제66조(창의도전수행평가 수행 및 조치) ① 창의도전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
- 1. 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과연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, 토론, 평가서 작성으로 실시한다.
- 2. 평가위원(평가위원장 포함)은 창의도전수행평가기준(별표 6)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.

- 3.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, 이때 평가위원 및 간사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 결과판정은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'창의도전수행'으로 판정한다.
- ③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평가위원별 평가서, 평가결과서 및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고, 국과연에 통보한다.
- ④ 국과연소장은 '창의도전수행'으로 평가받은 참여 인력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- ⑤ 사업통제부서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창의도전수행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창의도전수행 평가결과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창의도전수행평가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.
- **제67조(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)** ① 산학연주관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관련 협약심의위원회는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을 따른다.
  -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. 이 때 해당 사업이 법 9조 및 영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.
  -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,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 (국기연소장)에게 통보하고,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, 전자조달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④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8조 제3호와 제4호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이를 통지한다. 이때,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.
  - ⑥ 기품원장(국기연소장)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,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⑦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.
  -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,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.
  - ⑨ 성실수행평가 결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기준은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.

성실수행 평가 결과	참여제한 기간 감면	사업비 환수액 강면
70점이상~80점미만	12개월 이내 감면 가능	사업비 환수 금액의 50% 감면 가능
80점이상~90점미만	18개월 이내 감면 가능	사업비 환수 금액의 75% 감면 가능
90점이상~100점이하	24개월 이내 감면 가능	사업비 환수 금액의 100% 강면 가능

제68조(제재부가금 부과)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・징수할 수 있다.

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9조(재검토기한) 이 지침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**부칙** <제903호,2024.3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학연 제안 과제 주관기관 선정 경과조치) 제1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제안·공고되는 산학연 제안 과제에 적용한다.

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